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법령정보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 9일부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0.1)’,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 마트 진동사건(‘11.7.5)’ 등의 재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허가 전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을 심의토록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 구축,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계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됨으로서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월말 현재 전국의 준공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62동(초고층 67, 지하연계 195)이다.

주요내용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약제도’ 도입·시행

- 건축허가 전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계획 협의
-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내진 및 계층설비, 피난안전구역설치, 소방, 방범·보안, 테러대비, 침수방지, 지진해일 등에 관한 대비계획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시행**

-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시행
- 재난유형별 대응·응원 및 비상전파, 피난유도,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등 마련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을 통한 재난관리책임제 운영**

- 관리주체는 건축사·기술사·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

■ **상시근무자 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는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해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 최소 2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설치하고, 3명 이상 상주근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언이유

작년 장마(6.22~7.16) 종료 후 7.26~28까지 3 일동안 서울지역에 발생한 588mm의 강우량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방재기준을 넘어서는 폭우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특성이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구단위의 연계 시스템이 미흡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정비사업 등은 점·선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실행 강화와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강우량, 적설량, 풍속, 조위 등 기본하중도에 대하여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추진시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대책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용어는 위험성이 부각되어 안전도를 제고하는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1조의3, 제37조, 제70조, 제79조)

다.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내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건축, 형질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위 제한을 완화토록 함(안 제15조)

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방재시설 설계기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의4)

마.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까지 확대함(안 제18조)

바.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화 문제가 있어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규정 마련(안 제49조)

사.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추진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근거 마련(안 제56조)

법령정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재해대책사업”이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다. 그 밖에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제3조제2항제1호 중 “위험”을 “안전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해안전개선대책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① 중앙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이하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라 한다)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소관 업무장기 개발계획 수립 또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설계기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수해복구사업”을 “재해복구사업”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21조의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재해복구사업”을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 및 재해대책사업(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해복구사업”을

각각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제10조에”를 “제8조에 따른 소하천 관리청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제30조에”를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수용”을 “수용 및 사용”으로 한다.

제56제1항 중 “재해복구사업”을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을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대책사업에 필요한”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해복구사업”을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한다.

제70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를 “자연재해 안전개선지구 정비”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방재정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소방방재청장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통합·수립토록 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에 알리도록 하고,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대상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다.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거시설에

서 매년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2010.9.21 서울지역 3만여세대 침수)하는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지하건축물로 확대함(안 제15조)

- 라. 하천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시 침수흔적도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9조)
- 마.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하여 재해복구계획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정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사업의 확정 및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 사.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복구지원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7)
- 아. 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이 분산되어 있고 고시 시기가 달라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고시하도록

- 개선(안 제38조)
- 자.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정함(안 제41조의2 및 제42조)
- 차.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방재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재난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방재신기술 설계단가를 반영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1조)
- 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 변화 대비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해 방재제품·산업체 분류 및 방재산업의 수요조사결과 공개·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52조의2)
- 타. 방재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투명한 거래 확보와 양질의 방재제품 공급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52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 제2장(제3조부터 제24조까지), 제3장(제25조부터 제33조의2까지), 제4장(제33조의3부터 제42조까지), 제5장(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제6장(제55조부터 제7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風水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령정보

⑤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제3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제4조(검토 결과의 통보) ① 중앙본부장과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

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검토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이나 지역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 방식에 따르되, 가·나·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연재해위험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10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법령정보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절 풍수해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정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운용 및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방재성

능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소하천 제방, 배수(빗물)펌프장, 우수지, 하수관거, 우수유출저감시설,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의3(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 등)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유형별 분류 및 정량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재시설 등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유하시설, 저류시설 및 유역대책의 방재성능 분담 및 통합 방재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4. 경제성, 시공성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우수지(遊水池)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

법령정보

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중 15m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종 시설물·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

라. 과거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우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 묘지의 설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 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18.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급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5.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9.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

- 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투(浸透)시설
 - 가. 침투통
 - 나. 침투측구
 - 다. 침투트렌치
 - 라. 투수성 포장
 -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底流留)시설
 -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 나. 운동장저류
 - 다. 공원저류
 - 라. 주차장저류
 - 마. 단지내저류
 - 바. 건축물저류
 -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에 따른 비행장·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법령정보

4.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
-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토대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

- 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침수 흔적도는 침수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제20조(홍수위의 보고·통보 등) ① 한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본부장,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해일 및 설해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 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의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법령정보

2. 「항공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제4절 가뭄

제23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음용수 분야
 -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 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섬·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 다. 물 절약대책
 -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2. 농업·공업용수 분야
 -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 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 다. 지하수·간이용수원 개발대책
 - 라. 인력·장비 지원대책

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방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재해정보의 생산자·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관리할 것

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령정보

법 제3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 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

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 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 댐
3. 제1호와 제2호의 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4.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

법령정보

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정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0조제3항에 따른 댐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1. 댐과 저수지의 일반정보
2. 댐과 저수지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3.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홍수류 해석
4. 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방법
5. 관계기관별 책임·임무,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
6.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7.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8.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
9. 홍수 범람 지도(地圖)
10.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11.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3.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4.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농어촌·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법 제46조제2항에 따

라 중앙본부장은 확정된 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본부장은 즉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시·군·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 별로 작성·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 가. 피해 일시·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 다. 응급조치 내용
 - 라.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
 -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물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도로·교량, 하

천 등에 대한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3. 해안가 어항시설, 방파제, 방조제 등의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4. 도시계획 구역내 하천, 우수지,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하수관거 등의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④ 제73조에 따라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합동조사단·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정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5(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중 총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중 총 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제36조의6(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확정 및 시행 절차)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은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편성, 사업 기획, 계약, 입찰, 감독,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36조의7(중앙복구지원단 구성·운영)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복구지원단에는 “재해조사관”을 두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재해조사관의 임무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하천·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수립하는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이 잘못 포함된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3. 복구비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

법령정보

계 통보할 수 있으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점검방법, 점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 300억원(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 300억원 미만이라도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장이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는 사업

제47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① 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방재신기술 지정
 2. 방재감기술 검증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평가 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5.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

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試料)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6. 방재기술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기술한 서류(방재기술 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방재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방재신기술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방재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소방방재청 소관 분야의 방재기술평가만 해당한다)

③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제48조(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②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9조(방재기술평가의 방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방재신기술의 지정 또는 방재기술의 검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및 소관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재신기술 또는 방재기술의 명칭
2. 방재신기술 또는 방재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사람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50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보호 내용
5. 제52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⑦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방재기술평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방재기술 검증은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 대상 시설에

법령정보

대하여 일정 기간 시험·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방재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0조(방재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신기술 표시를 사용하거나 신기술 지정 사실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제2호의 기업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 설계단가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제52조의2(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방재제품은 장비·자재·시설 및 방재에 활용되는 전산·통신시스템 등으로 분류한다.
2. 방재 분야 산업체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분류한다.

가. 대분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체

나. 중분류는 장비, 자재,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업체

다. 소분류는 생산 제품의 유형 또는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

②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기 위해 지역본부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 현황에 대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④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2조의3(방재산업의 수요 조사결과 및 공개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4제2항에 따라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기관은 확정 통보받은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활용실적 및 효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방재 기술·정보의 보급)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방재 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 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 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 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제6장 보칙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인원·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 ②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법령정보

-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교육받게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

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중앙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68조(협회의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로 하되, 50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

법령정보

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역본부장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

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1.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가 전체 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재해 예방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7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상황의 조사권한 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의 조사권한 및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의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2장(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4장(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5장(제21조의2부터 제26조까지), 제6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 ② 협의회의 회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

법령정보

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6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국장·과장급 공무원
2. 풍수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가 임명·위촉, 검토회의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 수립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5(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및 대응

- 가. 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 나.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 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 라. 동원 인력·장비·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
- 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 사. 재해 발생 시 대비·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 아. 재해 원인 분석 결과

2. 복구 상황

- 가.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
-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 가.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모범 사례
-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법령정보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제3항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단계
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물자·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 복구단계: 개선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인명 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 등록증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행업무 분야
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제10조(대행자 변경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사업자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정보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단계

-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축산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3.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해복구

-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 제17조(복구비 등의 반환통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당사자에

게 발송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중앙부처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 ③ 사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법령정보

제17조의3(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 한다.

1. 중앙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도 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 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본부장 및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의 계획 변경)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증감
2. 사업길이의 100분의 10 이상의 길이 증감
3.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사업비 증가
4. 대상규모(사업면적)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주요시설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① 시·도 본부장은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 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 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를 말한다.

1.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제22조(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추진 절차 등)

① 영 제46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에 든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법령정보

4. 그 밖에 신기술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6항의 방재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방재기술 검증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방재기술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1. 방재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심사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현장평가비”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의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24조(방재신기술 표시의 도안 및 사용 방법) 영 제50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표시의 도안 및 사용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재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방재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 적용 결과, 성능·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라 한다)을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내야 한다.

제26조(평가심사비 등)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와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는 별표 3과 같다.

제6장 보칙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

- 한 사항
2.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의3(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 소방방재청

- 장은 영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안전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상)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